

# 장안구의 모범 공인중개사는 바로 나!

## 체크리스트



연번	확인사항	답변		배점
1	포털 사이트에 올린 중개 물건이 오늘 계약 체결 됐다.계약금이 입금된 날(계약 체결일), 광고를 내리면 된다.	○	X	30
2	공실 상가를 행인에게 알리고자 걸어둔 현수막 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한 나, 이대로 괜찮을까?	○	X	20
3	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대필을 요구한 임대인, 주 고객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준 나, 이대로 괜찮을까?	○	X	20
4	1년째 거래되지 않은 중개물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. 중개수수료 258,900원을 중개의뢰인이 고맙다며 260,000원으로 보냈다. 1,100원은 돌려줘야 할까?	○	X	20
5	몸이 너무 아파 중개보조원이 대신 올려준 중개대상물 광고 아뵘싸!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로 광고가 올라갔다. 다른 사항은 이상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?	○	X	10

연번	체크리스트 오답 풀이	정답
1	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·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	○
2	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광고시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항 모두 표기! 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	X
3	개업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간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 중개물건이므로,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등 꼼꼼히 확인하고 체결해야 한다. ➔ 대필은 존재하지 않음, 내가 한 계약 내가 책임진다..!	X
4	1,100원의 초과수수라도 초과수수! 중개수수료 꼼꼼히 계산하고 입금된 수수료도 꼭 확인하기! ➔ 업무정지 행정처분 사항	○
5	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!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안 돼! 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	X

<b>점수표</b>	<b>100</b>	<b>80~50</b>	<b>50~20</b>	<b>20~0</b>
	내가 바로 장안구의 넘버원 모범 공인중개사!	아뵘싸!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요!	행정처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!	공인중개사법 공부가 필요해요!

#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사항



## 게시사항

-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
-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
-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
- 사업자등록증
- 손해배상책임 보증가입 증명서 원본

## 중개업무

- 계약서 5년 보관
- 확인·설명서 3년 보관
-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
-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

## 고용·해고

- 고용 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
- 해고 시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
## 휴업·폐업

- 휴업 기간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음.
- 폐업 신고 한 경우 간판철거.

## 이 전

-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